

# 서울特別市永登浦區建築民願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

의안 번호	125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: 1992. 10. 24.  
제안자: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

## 1. 提案經緯

가. 1992년 10월 23일 제13회 영등포구의회 (임시회) 폐회중 개최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배기환의원의 1명이 成案하여 書面動議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키로 원안 가결

## 2. 提案理由

가. 현행 조례상의 제3조(구성)와 제6조(회의의 구성) 제7조(회의의 소집)의 내용중 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.

## 3. 主要骨子

- 가. 제3조 1항중 “20인”을 “15인”으로 함 (안 제3조)
- 나. 제6조 제1항중 “6내지 7인”을 “8내지 9인”으로 함(안 제6조)
- 다. 제7조 제2항중 “위원4인”을 “위원5인”으로 함(안 제7조)
- 라. 제9조 제1항중 “약간명”을 “서기1인”으로 함(안 제9조)
- 마. 부칙중 “날로부터”를 “날부터”로 함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

# 서울特別市永登浦區建築民願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중 “20인”을 “15인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1항중 “6내지 7인”을 “8내지 9인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2항중 “위원4인”을 “위원5인”으로 한다.

제9조 제1항중 “약간명”을 “서기1인”으로 한다.

부칙중 “날로부터”를 “날부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<u>20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② (생 략) ③ (생 략)	제3조(구성) ①	----- ----- <u>15인</u> ----- -----	
제6조(회의의구성) ①위원회의 회의는 민 원사항에 따라 <u>6내지 7인</u>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② (생 략)	제6조(회의의구성) ①	----- ----- <u>8내지 9인</u> ----- -----	
제7조(회의의소집등) ①생 략 ②위원회의 회의는 <u>위원4인</u> 이상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③ (생 략) ④ (생 략) ⑤ (생 략)	제7조(회의의소집등) ①현행과 같음	② ----- <u>위원5인</u>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	
제9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과 <u>약간명</u> 을 둔다.	② (생 략) ③ (생 략)	제9조(간사) ①	----- ----- <u>서기 1인</u>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	
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<u>날로부터</u> 시행한다.		부 칙	----- ----- <u>날부터</u> -----	